

##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5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5월 12일

3. 제안이유

- 체육시설업 인허가와 관련한 기부금품모집금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도내에서 등록체육 시설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기탁한 성금」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령 및 정부의 준조세제도 폐지방침에 위배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991년 5.17를 제정 시행 하여온 조례이나 최근 정부의 방침에 있어 각종 준조세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기부금품 등의 모집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금 접수행위 등을 금지하는 기부금품모집 금지법령이나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방침에 위배되는 조례로서 존치될 필요성이 없는바

본 폐지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첨 부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